

# 더 비치 푸르지오 씨밋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각 기관별 추천 기준에 따른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해당 신청일에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를 해야 하며, 미접수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9.08.(금) (예정)에 더 비치 푸르지오 씨밋 당사 홈페이지(추후 업로드 예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하지 않습니다.

## I. 공급개요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1808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3층, 지상25층~43층, 8개동 총 1,384세대[조합원 993세대(보류지 8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391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25세대**
- **분양가 및 분양조건**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에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이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시기** : **2023년 12월 준공 예정(후분양)**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비고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059.8917A	59A	59.8917	21.0664	80.9581	43.3444	124.3025	38	4	
059.9372B	59B	59.9372	21.3656	81.3028	43.3774	124.6802	94	9	
059.8515C	59C	59.8515	21.6434	81.4949	43.3153	124.8102	77	8	
084.9866B	84B	84.9866	28.2959	113.2825	61.5058	174.7883	48	4	
합계							257	25	

## II. 기관추천 유형별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 : 전용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이내]

구분(기관)		59A (예비)		59B (예비)		59C (예비)		84B (예비)		합계
장애인	부산광역시	1	(5)	1	(5)	1	(5)	1	(5)	4 (20)
	울산광역시	-	-	1	(5)	1	(5)	-	-	2 (10)
	경상남도	-	-	1	(5)	1	(5)	-	-	2 (10)
국가유공자 등		1	(5)	2	(10)	1	(5)	1	(5)	5 (25)
장기복무 제대군인		-	-	1	(5)	1	(5)	-	-	2 (10)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국군복지단)		1	(5)	1	(5)	1	(5)	1	(5)	4 (20)
중소기업 근로자		1	(5)	2	(10)	2	(10)	1	(5)	6 (30)
소계		4	(20)	9	(45)	8	(40)	4	(20)	25 (125)

- **당첨예정자** : 기관에서 "당첨자(확정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으로 "당첨자"가 되는 자
- **예비대상자** :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 이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 ※ 상기 세대수는 현재 분양승인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예비대상자 포함)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Ⅲ 기관추천 특별공급 분양 일정(예정)

구 분	신청 접수일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b>2023.09.08.(금) 예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li> <li>• 당사 홈페이지(추후 업로드 예정)</li> <li>• 견본주택 전화번호 : <b>051-784-1384</b></li> </ul>
특별공급 청약접수 (인터넷 청약)	<b>2023.09.18.(월) 예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인터넷청약(www.applyhome.co.kr / 09:00~17:30)</li> <li>•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포함</li> <li>•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 (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10:00~14:00)</li> </ul>
당첨자 발표	<b>2023.09.26.(화) 예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ul>

※ 특별공급 해당 신청일에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와 상이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하니 반드시 승인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IV.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대상 자격요건

<b>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b>무주택 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li> </ul> </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b>청약자격 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li> </ul> </li>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b>입주자저축 자격 요건</b>	<p>[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추천 기관부서	구분		해당기관	비 고
	장애인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등 / 장기 제대군인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유의사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주택형별/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단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통장 필요 없음]</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청약홈 www.applyhome.co.kr)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li> <li>•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및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li> <li>•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li> <li>•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li> <li>•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로 간주됩니다. (1회 특별공급 간주)</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ul>

  

당첨자 선정방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추천대상자 중 각 기관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li> </ul>

## V.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부적격 등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등의 당첨 취소 물량과 미계약 물량의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간주되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VI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공통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10:00~14:00)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 시에는 방문예약 후 청약유형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의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추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미 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VII 문의사항 안내 및 위치도

건본주택	사업장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678-2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1808번지 일원
분양문의	051-784-1384